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39-78  
<https://doi.org/10.29212/mh.2025..135.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이순신의 관직 변동 및 강등 여부에 대한 고찰

이철희 |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 목 차
1. 서론
  2. 이순신의 관력 및 조선의 관료 인사행정
  3. 만호 역임기
  4. 정읍현감 역임 및 삼도수군통제사 복직기
  5. 결론 : 이순신 생애의 재검토 필요성

**초 록** 본고의 목적은 이순신(1545-98)의 관직 경력을 그의 자금 변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만호 재임기, 정읍현감 재임기, 삼도수군통제사 복직기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대해 이순신이 몇 차례 관직 강등을 겪었다는 인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파직과 강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순신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순신은 각각 1580년과 1586년에 발포만호와 조산만호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호는 종4품의 상당한 고위관직인 반면 만호 재임 전후 시기에 이순신의 관직은 종8-종6품직에 그치고 있었다.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 인사행정제도를 살핀 결과, 관원의 자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등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16세기 후반에는 젊은 초급무관에게 권관의 직함을 주어 첨사진 또는 만호진에 차송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종9품 등 초급무관에게도 만호직이 제수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순신이 급격하게 승진과 강등을 겪었다는 기존의 일부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정읍현감 재임기 이순신의 품계는 법제상 현감의 관품을 따라 종6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현감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자급의 관원들이 임명되는 일이 많았고 동 시기 남해안의 현감직에 제수된 무관들 역시 4품 내외의 자급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이 강등되어 현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수령직은 4품 이상 관직에 진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1597년 이순신이 자급이 강등되어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되었다는 최근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료상의 오기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순신은 승진과 강등을 거듭하였던 것이 아니라 능력과 군공을 인정받아 꾸준히 승진하였다. 조선 조정의 전란 대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최근의 동향과 같이, 본고의 연구성과는 조선 조정의 관료 및 군 인사행정에 대한 재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이순신, 만호, 권관, 지방관, 임진왜란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임진왜란기를 중심으로 활동한 수군 지휘관인 李舜臣(1545~98)의 생애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이순신의 관직이 강등되었다는 일부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가설을 제시하고,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조선 중기의 무관 인사에 대한 적실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순신은 군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한국사의 인물로, 본고의 연구를 통해 이순신의 관력과 그의 생애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순신은 1576년 무과급제 이후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육군과 수군,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발포만호(1580~82), 조산만호(1586~87), 정읍현감(1589~91) 역임 시기 및 2차 백의종군 후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한 1597~98년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상 네 시기에 대해서는 이순신의 생애 가운데 자급이 강등되었다는 학설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겪었던 고난인 파직 및 백의종군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인물사적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순신의 관직 경력 가운데 그의 품계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 관료제도에서 관료의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식적인 직급이며, 직급의 등락은 해당 인물이 관료제 체제에서 받은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순신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반면, 그의 품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공백이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음 장에서 상세 설명할 바와 같이 조선 관료제에는 관직에 주어지는 관품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급 두 가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본고에서는 이순신 개인의 자급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자급을 중심으로 승진과 강등 여부를 고찰한다.

종래의 이순신 인물사 연구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고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사료의 고증을 통한 엄밀한 관력 규명 노력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이순신의 관력은 승진과 파직, 강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그가 관직생활 전반기에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순신 인식은 크게 보아,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한바 임진왜란 연구사 전체를 관통하는 ‘징비록적 왜란관’(민덕기, 2010; 이호준, 2010)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진다. 군사사 분야에서는 조선왕조가 전란 조짐에도 불구하고 대비에 소홀하여 전쟁을 겪게 되었다는 인식이 상당 기간 우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柳成龍의 『징비록』이 남긴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축적된 연구 성과로 조선 조정의 국방력 강화 노력이 조명되면서 ‘징비록적 왜란관’은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sup>1)</sup> 그러나 이순신의 일생에 대해서는, 그가 등과 후 ‘十年不調’하였다는 『징비록』의 평가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임진왜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사 정리는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 2010;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조인희, 「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학림』 46, 2020; 김경태, 「2000년대 이후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08, 2024 참고.

본고에서는 먼저 검토 배경으로서 이순신의 관력을 간단히 조망하면서 선행 연구의 입장을 확인한 후, 조선의 일반적인 인사 행정 제도에 대해 개괄한다. 다음으로 그의 관력을 만호직, 현감직, 삼도수군통제사직으로 나누어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료 해석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짚으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이순신의 관력 및 조선의 관료 인사행정

### 가. 이순신의 관력

이순신의 관력은 『이충무공전서』의 「연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연표」는 후대에 편찬된 것으로 1차 사료는 아니지만, 일부 오류를 제외하고는 17세기에 편찬된 李芬의 「행록」과 일치한다. <표 1>은 전라좌수사 제수(1591) 이전의 초기 경력을 발췌한 것으로, 이순신이 만호 및 현감을 역임한 시기를 포함한다. 이후 이순신은 전라좌수사 및 삼도수군통제사(1593)를 역임하며, 1597년 2월 파직된 이후 8월에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이순신의 품계에 대해서는 해당 관직에 대응하는 법제상의 관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 동향이었으며, <표 1>에 같이 표시하였다.

〈 표 1 〉 이순신의 관력 (1576~1591)

| 연도   | 주요 관력 <sup>2)</sup>   | 관품 <sup>3)</sup>  |
|------|---|-------------------|
| 1576 | 2월, 식년무과에 합격하다.<br>12월, 함경도의 동구비보 권관이 되다.   | 종9품               |
| 1579 | 2월, 훈련원 봉사가 되다.<br>10월, 충청 병사의 군관이 되다.  | 종8품               |
| 1580 | 7월, 발포 수군만호가 되다.  | 종4품               |
| 1581 | 1월, 일로 인해 파직되다.<br>5월, 훈련원 봉사가 되다.  | 종8품               |
| 1583 | 10월, 건원보 권관이 되어 瀟胡를 소당하다.<br>훈련원 참군이 되다. 부친상을 당하다.  | 종9품<br>정7품        |
| 1586 | 정월, 상복을 벗다. 사복시 주부가 되다.<br>조산보 병마만호로 천거되다.  | 종6품<br>종4품        |
| 1587 | 8월, 녹둔도 둔전관을 겸하다. 절도사 李鎰의 무함으로 파직되어 백의종군하다.   |                   |
| 1589 | 2월, 전라도 순찰사 李洸의 군관이 되다.<br>11월, 선전관이 되다.<br>12월, 정읍 현감이 되다.                               | 종6품               |
| 1590 | 7월, 고사리진 병마첨절제사가 되다.<br>8월, 절충장군에 올라 만포진 수군첨절제사가 되다.                                      | 종3품<br>(정3품)      |
| 1591 | 2월, 진도 군수,<br>가리포진 수군첨절제사에 제수되었다가<br>전라좌도 수군절제사가 되다.<br>3월, 왜의 침략에 대비, 병기를 정비하고 龜船을 제작하다. | 종4품<br>종3품<br>정3품 |

이순신의 초기 관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위논문 및 단행본 형태의 대중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학술지를 통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종래 연구들은 이순신의 관직 경력에

2) 오세옥, 「이충무공전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편, 『韓國文集叢刊』, 1998. 위 표는 『이충무공전서』의 「연표」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나, 해제에는 1586년이 누락되어 있어 「연표」를 따라 보충하였다.

3) 김경수, 『이순신의 『난중일기』 읽기』, 세창미디어, 2021, 146~147쪽. 원문에는 만포첨사의 품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첨사는 대부분 종3품이었으나 만포 등 일부 요해처는 절충장군으로 정3품 당상관이었다.

대해 「연표」의 기록을 대부분 신뢰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sup>4)</sup> 이순신의 초기 생애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그의 가계가 불우하였고 관직진출이 늦었으며,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관직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근래에는 이순신의 생애와 관력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여러 오해를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다. 이순신의 가계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나 백의종군 형벌이 일반병으로의 강등이 아니라 일시적 보직해임에 해당한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sup>5)</sup> 그러나 여전히 이순신이 초기 관직생활

4) 학위논문을 포함한 주요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숙, 「忠武公 李舜臣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효수, 「李舜臣의 리더십에 대한 現代의 照明」,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황인명, 「忠武公 李舜臣의 革新思想을 통한 政府革新 方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두환, 「忠武公 李舜臣의 리더십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혜영, 「이순신의 리더십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재광,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임진왜란」, 『서울과 역사』 71, 2008; 박정규,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 재조명」, 『이순신연구논총』 11, 2009; 조신호, 「이순신 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한편 이순신 생애에 대해서는 대중서의 영향력이 큰 편인데, 이 가운데 전문 연구자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는 최석남, 『救國의 名將 李舜臣』, 교학사, 1992; 이상훈·노성호·박재광·최두환, 『충무공 이순신』,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최두환,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우석, 1999; 송대성, 『충무공이순신과 현충사』, 현충사관리소, 1999; 조성도, 『충무공 이순신』, 연경문화사, 2001; 국립진주박물관 편, 『삶에서 신화까지 忠武公 李舜臣』, 예맥, 2003; 이성무, 『명장열전』, 청하출판사, 2011; 전호수,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참고. 이상의 연구들이 「연표」의 기록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국대전』 병진 외관 직조에 만포첨사는 병마첨사이고 조산만호는 수군만호이나 「연표」에는 반대로 되어 있다. 또 발포만호 파직 시기에 대해 「연표」에는 신사년(1581)으로 되어 있으나 李芬의 「행록」, 崔有海의 「행장」에는 임오년(1582)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후자를 신뢰하고 있다. 1590~91년 고사리첨사, 만포첨사, 진도군수 및 가리포첨사 제수에 대해서는 「행록」 및 「행장」에 실제로는 부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5)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 2008; 이민웅, 「이순신 정론Ⅱ - 출신 배경과 명량해전 철쇄설치 문제 -」,

에서 승진과 강등을 반복하였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장학근(2004)은 이순신의 등과가 늦고 성적이 낮았다는 통설을 비판하고 그의 무관으로서의 仕路도 나란히 급제한 同年에 비하여 뒤처지지 않았음을 밝혔으나 이순신이 발포만호 재임 시기 상관과의 불화로 파직되고 품계가 종4품에서 종9품으로 강등되었다고 보았다. 이민웅(2010)은 이순신의 출신배경이 불우하였고 관직생활 기간 동안 상관과의 불화로 고난을 겪었다는 기존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초기 이순신의 가계와 관력에 관한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만호직 역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는 발포만호 시기를 이순신이 젊은 시기에 수군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발포만호를 종4품으로 적시하였다.

#### 나. 조선 관료제의 인사행정 규정

본절에서는 조선왕조의 법제서와 학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순신의 품계 변동이 조선 중기의 무관 인사행정에서 가능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주로 이순신의 관력 전반기에 해당하는 당하관의 무반직에 논의의 초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순신은 만호직 역임을 전후하여 승진과 강등을 겪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크게 승진과 강등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 본고의 연구 범위가 조선 전기이므로 주로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검토하기로 한다.

---

『이순신연구논총』 17, 2012; 제장명, 「조선시대 백의종군 사례와 이순신의 백의종군」, 『이순신연구논총』 15, 2011; 제장명, 「이순신 정론 I - 해전횡수, 면사첩, 백의종군 -」, 『이순신연구논총』 17, 2012.

## 1) 官品과 資級

잘 알려진 대로, 조선의 관료는 官階(또는 품계)와 관직을 받았다.<sup>6)</sup> 관계는 높고 낮은 등급을 가리키며 관직은 소속관청에 따라 수행하는 직분에 해당하였다. 조선은 관직마다 법제상으로 상응하는 등급(관품)을 규정해두었지만, 해당 관직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등급(자급)과 그가 재임 중인 관직의 관품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관품은 해당 관직자가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자급은 해당 관직자가 가지는 개인적 지위를 나타내었으며 녹봉 또한 관품이 아닌 자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sup>7)</sup> 자급보다 낮은 관직을 받으면 行職이라 하였고, 자급보다 높은 관직을 받으면 守職이라 하였다. 그러나 7품 이하는 2계,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넘어 수직을 줄 수 없었다.<sup>8)</sup> <표 1>에서 표시된 이순신 품계는 관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료의 지위는 자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관품과 자급이 불일치하는 행수법은 조선의 관료제 운용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으므로 인물의 관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관품뿐 아니라 자급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2) 승진

관품과 자급을 별개로 운용한 조선 관료제에서는 승진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법제상 더 높은 관품에 대응하는 관직으로 옮길 경우 陞職이라고 한다. 개인의 자급이 올라가는 것은 陞階, 陞資, 加階, 加資 등의 용어로 지칭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직을 시킬 때는 자급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상례였으며, 이처럼 가자

6) 한충희, 「관직과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1994.

7) 『성종실록』 권266, 성종 23년 6월 20일 기미.

8) 『경국대전』 이전 고신.

와 승직을 같이 받는 경우를 陞敍라 하였다(대등한 관직으로 옮기는 것은 平敍라 한다). 승진이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양자를 모두 가리킬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관직이 아닌 자급에 초점을 맞추어, 자급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승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강등 역시 자급이 깎인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조선에서 문과 또는 무과에 급제하면 성적과 급제 전 자급에 따라 6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을 받았다. 무과 합격자는 別侍衛와 훈련원 권지에 分差된다.<sup>9)</sup> 이순신은 병과 4위로 등과하여 권지훈련원봉사로 差任되었고,<sup>10)</sup> 급제 이전에 자급이 없는 保人이었으므로 종9품부터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7품 이하의 관료는 근무일수 450일이 차면 관직을 이동시키고 관계를 승진시킨다.<sup>11)</sup> 무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중도에 보직을 이동할 수 있었으나,<sup>12)</sup> 승진은 마찬가지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 무반 관직 중에서도 병조 등 일부 경관직과 수령은 승진 전에 內外四祖와 본인의 허물에 대해 兩司의 署經을 거쳐야 한다.<sup>13)</sup> 이렇게 근무일수를 채워 승진하는 방식을 循資制라고 한다.<sup>14)</sup>

순자제 이외에, 포폄, 고과에 의한 방식도 있다. 무관은 경관직의 경우 병조의 당상관에게, 외관직은 소속 관찰사 또는 절도사에게 연 2회 고과를 받는다.<sup>15)</sup> 7품 이하 참하관의 경우 근무연한이 끝날 때까지 세 차례 고과를 매겨 두 차례 상을 받으면

9) 『경국대전』 병전 무과.

10) 李植, 『澤堂先生別集』 권10, 統制使贈左議政李公謚狀.

11)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이러한 의무 근무일수는 6품 이상의 경우 900일로 늘어나며, 당상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경국대전』 병전 경관직.

13) 『경국대전』 이전 고신.

14) 김렬, 「조선시대 관료의 승진 실태: 6품 승진(승륙)의 기준 및 요인」, 『한국행정논집』 29, 2017, 5쪽.

15) 『경국대전』 이전 포폄; 병전 포폄.

가계되어 직급이 상승할 수 있다.<sup>16)</sup> 한 번 中을 받으면 더 높은 관직으로 옮길 수 없고, 두 번 연속 中을 받거나 下를 받으면 파직된다.<sup>17)</sup> 『행록』에는 1580년 이순신의 발포만호 근무 시기에 수사 李戡의 미움을 받아 下를 받아 파직될 뻔했으나 都事 趙憲의 항의로 위기를 벗어난 일화가 있다. 순자제와 포폄제의 승진 규정에 대해서는 둘 다 만족시켜야 승진이 가능하며, 따라서 청요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참상관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sup>18)</sup> 다만 조선 중기의 여러 사례들을 볼 때 1자급 승진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린 사례들이 많아 순자제의 자격을 채우지 않더라도 포폄제의 요건을 채우면 자급이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하관의 관계는 종6품 이상 참상관과 정7품 이하 참하관으로 나뉜다. 참상관의 자리에는 다른 부서로부터의 승진(越品)자가 직접 임용될 수 없었다.<sup>19)</sup> 참하관이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시되어 陞六이라 불렸다. 참상관은 수령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의전이나 行刑에서의 예우를 받았다.<sup>20)</sup> 또 조선 후기의 규정이기도 하지만 6품으로 가계되기 위해서는 考講 등의 여러 시험을 치러 합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17~18세기의 典牲署 참하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22~780일(평균 약 360일)의 근무일수를 채운 뒤 80%가 승서된 것으로 드러나, 적어도 청요직이 아닌 관서에서 참하관은 승진하는 데 1년에서 2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16)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17) 『경국대전』 이전 고과. 단, 당상관인 수령은 한 번 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18) 이성무,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 1980; 이성무, 「벼슬」,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경국대전』 이전 제수 육품이상승서.

20) 김렬, 앞의 논문, 2017.

21) 나영훈, 「17~18세기 典牲署의 관직 운영과 參下官의 官路」, 『동양고전

조선 중기의 실록 기사에는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관원들의 승진이 대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改正(취소)된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임진왜란기에는 군공에 의한 고속 승진이 많았으므로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의 인사행정 제도상 몇 단계를 건너뛰어 임용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 법사학계의 견해이다.<sup>22)</sup>

<표 2> 선조대(임진왜란 전) 근무일수 미달을 사유로 한 승진인사 개정 사례

| 연도   | 대상자 | 승진 후 자급 | 개정 사유                          |
|------|-----|---------|--------------------------------|
| 1576 | 趙應亨 | 4품      | 6품에서 4품으로 곧장 승진                |
| 1576 | 丁胤祐 | 5품      | 6품 근무일수 10개월 미만                |
| 1582 | 閔士俊 | 3품 당상관  | 6품 이후 누적 근무일수 5년 미만            |
| 1586 | 鄭士信 | 5품      | 6품 근무일수 5개월 미만 <sup>23)</sup>  |
| 1587 | 金瓚  | 2품      | 3품 근무일수 7개월 미만 (개정하지 않고 임명 강행) |
| 1588 | 金洛  | 5품      | 6품 근무일수 10개월                   |
| 1590 | 鄭景倫 | 4품      | 5품 근무일수 20개월 미만                |
| 1590 | 安昶  | 6품      | 7품 근무일수 1년 미만                  |

### 3) 파직 및 강등

조선 관료제에서 파직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고 敍用(복직) 또한 마찬가지였다. 파직된 관리가 청요직으로 복직하는 사례도 대단히 많았다.<sup>24)</sup> 삼司의 論劾을 받지 않더라도, 고과가 좋지

연구」 69, 2017.

22) 김중권, 「朝鮮朝 公務員(官吏)任用制에 관한 行政法的(公務員法的) 考察」, 『법제연구』 27, 2004, 201쪽.

23) 국역 『조선왕조실록』에는 50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五朔으로 되어 있다.

24) 김렬, 「조선시대 관찰사의 파직 실태」, 『한국행정논집』 27, 2015, 15쪽.

않거나 죄에 연루되거나 도덕성 문제로 파직되는 것은 매우 흔하였다.<sup>25)</sup> 이는 급제자가 많고 관직 수가 적은 조선 관료제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파직된 관리는 기존의 자급을 상실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관료제에서 자급의 박탈과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의외로 연구가 많지 않다.<sup>26)</sup> 일반적으로는 관직을 잃어도 자급이 유지되고 전직 관료로 대우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먼저 『경국대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私罪를 지은 관리는 등급에 따라 告身(職牒)을 추탈당한다. 18등급의 품계를 각 1등으로 계산하여 장 60대 형에 상당하는 죄는 1등, 70대는 2등, 80대는 3등, 90대는 4등을 추탈하며, 장 100대 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고신을 모두 추탈한다.<sup>27)</sup> 그러나 파직이 모두 사죄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파직되었다고 하여 모두 품계가 강등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죄를 지은 관리는 조선 초기에는 차등을 두어 고신을 추탈하였으나 『경국대전』이 정비되면서 대명률의 규례를 따라 공죄에는 고신 추탈을 적용하지 않았다.<sup>28)</sup> 이때 공죄와 사죄의 구분은 『경국대전』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漢律 이래로 계승된 중국과 한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주관적 행위동

25)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전북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동고전연구』, 41, 2018, 32쪽.

26) 법학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승현,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57, 2018 참고.

27) 『경국대전』 형전 推斷. 원래 추탈은 직첩을 소급하여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명률에서는 장 60~90대에 대해 降一等~降四等, 장 100대는 罷職不敘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강등 및 고신추탈 규정이 문무관에게 모두 적용되는 반면, 대명률에서는 무관의 경우 杖刑을 받을 경우 降等敘用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문관과 달리 파직불서가 없고, 일단 充軍된 후 군공을 세울 때 불차탁용으로 복직시킨다. 『대명률직해』 권1, 제8조 文武官犯私罪 참조.

28) 그러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종종 공죄를 저지른 관리에 대해서도 고신 추탈이 이루어졌다. 이승현, 앞의 논문, 2018, 81쪽 참고.

기에 따라 사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사죄, 관리가 공무 수행 중 착오로 저지른 죄는 공죄에 해당한다.<sup>29)</sup>

조선 관료제에서 현직에서 떠난 관리의 지위와 예우는 매우 다양하였다. 대명률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되거나(任滿), 소속 관청이 폐지되거나(改除), 연로하여 사직하는(致仕) 등 정당한 사유로 직을 잃은 전직(原任) 관리는 현직(時任)과 같게 대우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0)</sup> 한편 사죄를 지어 파직된 관리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서용될 수도 있고,<sup>31)</sup> 罷職不敘의 처분을 받아 복직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때 대명률에서는 파직불서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고신을 회수하지는 않으며 官名을 남겨둔다고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자급이 남아있게 된다. 고신을 추탈하고 관명을 삭제(追奪除名)하는 처분까지 이른 뒤에야 관작이 모두 박탈된다.<sup>32)</sup> 『경국대전』 역시 파직만 당한 자와 고신까지 회수당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sup>33)</sup> 조선은 대명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수시로 사면을 통해 파직한 자를 복직시키거나 직첩을 회수한 자라도 이를 환급하여 이전의 자급을 회복시켜주는 등 관료제를 유연하게 운영하였다.<sup>34)</sup>

조선 관료제에서 파직을 당하거나 직첩을 회수당한 관리라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한 관료 후보군이었다. 『경

29) 한상권, 「公罪와 私罪」, 『법사학연구』 53, 2016.

30) 『대명률강해』 권1 名例律, 제12조 以理去官.

31) 『경국대전』 이전 고과 파직자. 그러나 당상관 등 고위 관리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587년 전라좌수사 李薦은 휘하 발포만호를 매질하여 죽게 하고 상급자인 방어사가 보낸 關子를 열어보지도 않은 죄로 장 80대와 고신 3등 추탈에 처해졌으나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직첩을 받고 다시 서용되었다(『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8월 26일 계미; 10월 7일 임술).

32) 『대명률강해』 권1 名例律, 제14조 除名當差.

33) 『경국대전』 이전 천거 收告身及罷職者.

34) 이승현, 앞의 논문.

『경국대전』에서는 파직을 당하거나 직첩을 회수당한 문무반 관리의 명단을 매년 6월과 12월에 임금에게 啓聞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5)</sup> 연 2회의 歲抄에서 임금은 유배 죄인을 사면하거나, 직첩을 회수당한 관리에게 직첩을 환급하거나 파직당한 관리를 다시 서용하는 등 인사의 교체를 행하였다. 세초는 비단 인사에 관한 것은 아니며, 재정과 군사에 관한 일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사 결정을 받는 기능도 같이 수행하였다. 죽은 뒤에 관직을 추탈당한 죄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임금에게 명단을 보고하여 필요시 임금이 死者의 직첩 환급을 명하기도 하였다.

이상 조선 전기의 관료 인사행정에 대해 직급체계 및 승진·강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의 관료는 관직에 따른 관품과 개인의 근속 및 인사고과 등에 따른 자급을 보유했다. 관료의 승진과 강등은 규정에 따라 행하여졌으며, 파직된다고 하여 곧바로 자급이 박탈되거나 강등되지는 않았다. 자급의 강등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파직과 복직이 일상적이었다. 다음 장부터는 이순신의 만호직, 현감직, 삼도수군통제사직 역임에 대해 그의 자급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3. 만호 역임기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순신이 1580년 발포만호, 1586년 조산만호를 역임하였다는 사료의 기록에 대해서는 학계 내외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특히 이순신의 만호 역임기 품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경국대전』의 관품 규정을 따라 종4

35) 『경국대전』 이전 천거 收告身及罷職者.

품으로 보고 있다.<sup>36)</sup> 예외적으로 최두환(1999)이 자신의 대중서에 포함한 연표에서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발포만호를 종8품으로 표기하였는데 동 저자의 다른 대중서(최두환, 1998; 2011)에서는 연표의 발포만호 부분을 종4품으로 고쳤으므로 의도되지 않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sup>37)</sup>

그런데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순신이 두 차례 만호를 역임하였다는 것과 만호의 관품이 종4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료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것이 종종 이순신이 복직 과정에서 강등되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사료에 이순신이 강등되었다는 언급이 없음에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사료에 나타나는 이순신의 관직에 대해 법적 관품을 대응시키면서 승진과 강등을 해석하는 접근법 때문이다. 종4품직인 발포만호와 조산만호를 역임한 뒤 이순신에게 제수된 관직인 훈련원봉사와 정읍현감은 각각 종8품과 종6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발포만호와 조산만호에 제수되기 전 이순신은 각각 종8품직 훈련원봉사와 종6품직 사복시주부였으므로 강등설의 논리는 이순신이 종4품직 만호로 승진하였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본장에서는 이순신의 만호 재임 후 강등되었다고 볼 경우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설을 제기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순신이 만호 역임을 전후하여 급격한 품계 변동을 겪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가설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16세기 중반 이후의 만호진 운영 정책 및 이순신의 관력을 감안하였을 때, 그가 실제로는

36) 최석남, 앞의 책; 이상훈·노성호·박재광·최두환, 앞의 책; 송대성, 앞의 책; 조성도, 앞의 책; 국립진주박물관 편, 앞의 책; 장학근, 앞의 논문; 정혜영, 앞의 논문; 이민웅, 앞의 논문, 2010; 전호수, 앞의 책; 이민웅, 앞의 책, 2012; 조신희, 앞의 논문.

37) 김효수(2003)와 황인명(2005)도 이를 답습하여 종8품으로 보았으나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권관의 직함을 가지고서 만호진을 지휘하였으나 당시 관행에 따라 사료에 만호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설령 이순신이 권관이 아닌 정식 만호였다 하더라도, 만호의 법적 관품인 종4품보다 훨씬 낮은 자급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가. 강등 해석의 의문점

조선시대의 사료에는 이순신의 자급이 깎였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그의 발포만호 제수에 대해 단순히 자리를 옮긴다는 轉職 또는 轉이, 훈련원봉사와 건원보 권관이 되었을 때는 복직한다는 뜻의 復仕, 敍用 또는 敍爲가 사용되며, 조산만호와 정읍 현감 제수에 대해서는 단지 임명되었다는 뜻의 授, 拜, 爲, 除 등의 용어가 쓰였다.<sup>38)</sup> 여기에 승진이나 강등의 뜻을 가진 승직, 승서, 降職, 降遞 등의 용어는 일체 쓰이지 않았다. 반면 훈련원참군, 사복시주부, 만포첨사, 가리포첨사, 통제사 등에 제수될 때는 승진을 의미하는 陞爲, 陞至, 進階 등의 용어가 종종 사용되었다.

강등이라는 해석은 관품과 자급을 별개로 운용한 조선 관료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관직의 변동과 개인의 자급 변동에 대해 개념상의 혼란을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 주장과 같이 이순신의 품계가 만호 역임기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후 강등되었다고 본다면, 앞장에서 검토한 조선 전기 인사행정 규정에 비추어볼 때 승진과 강등 양쪽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38) 李植, 『澤堂先生別集』 권10, 「統制使贈左議政李公謚狀」; 李芬, 『李忠武公全書』 권9, 「行錄」; 崔有海, 『李忠武公全書』 권10, 「行狀」; 金埴, 『潛谷先生遺稿』 권13, 「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

첫째, 승진 속도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을 살펴볼 때, 종9품으로 무과에 합격한 자가 종6품의 참서관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6품을 올라가야 하며, 한 차례도 진급 누락이 없고 모든 고과에서 상을 받았다고 할 때 종4품 만호는 차치하고 참서관이 되는 데에만 최소한 6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순신이 종9품에서 종8품으로 두 자급 승진하는 데에도 실제 2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순신은 종8품 훈련원봉사로 승진한 지 17개월 만에 종4품직에 제수되었다. 법적으로 행수법을 통해 낮은 자급으로도 상위의 관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3계가 한 계이기 때문에 만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5품까지는 승진하여야 한다.<sup>39)</sup>

특히 1580년 이순신의 발포만호 제수는 단번에 종8품에서 종4품으로 8품을 건너뛴 것으로, 1591년 정읍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 승차할 때의 7품보다도 격차가 크다. 국왕이 정무적 판단으로 7품을 건너뛴 인사를 단행할 때도 대간의 반대가 있어 중간에 두 차례 관직을 제수하는 변칙 인사를 했는데, 무과에 급제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초급 무관이 8품을 건너뛰어 종4품직에 제수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4품은 5품 이하와는 구분되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4품은 양사의 서경 없이 임금의 官敎만으로도 임용이 가능하고 고신의 명칭도 敎牒에서 敎旨로 달라지며, 무반 중 4품 이상은 임금과의 輪對에 참석할 수

39) 1597년 칠천량해전에서 전사한 충청수사 崔湖의 아버지 崔漢禎은 1552년 봉훈랑(종5품 하계)이었다가 무과에 합격하면서 규례에 따라 1자급을 더 하여 현신교위(종5품 상계)로 승진하고 守조산만호로 守職을 받은 고신이 고문서로 남아 있다. 최호 본인은 1576년 수의부위(종8품)였다가 그 해 무과 장원급제로 선교랑(종6품 상계) 품계를 받은 뒤 1577년 승훈랑(정6품 하계)이 되고, 1579년 충의교위(정5품 하계)에서 과의교위(정5품 상계)로 승계된 다음 1580년 선략장군(종4품 하계)으로서 추파만호에 제수되기까지 각 품계를 차례로 밟아나간 것이 남아 있는 홍패 및 고신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있고 관직에 제수되면 사은숙배 등 형식이 부가된다.<sup>40)</sup> 1535년 무과에 급제한 宋堦은 선전관을 거쳐 1540년 종5품 온성판관에 제수되었으나 승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헌부의 반대로 취소되었다.<sup>41)</sup> 송전은 이미 급제 전에 북청판관을 역임하던 현직 관리였고 청요직인 선전관을 지냈는데도 급제 후 5년 만에 5품으로 승진이 되지 못한 반면, 이순신은 무과 급제 이전에 현직 관리도 아니었음에도 급제 4년 만에 종4품이 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파직 후의 자급 강등이다. 이순신은 발포만호와 조산만호에서 파직된 후 각각 4개월, 18개월 후에 서용된다. 그런데 <표 1>에서, 그의 복직 후 관품이 만호의 관품보다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발포만호에서 파직된 후에는 관품이 다시 8품을 내려가 종8품직 훈련원봉사가 되었다. 이러한 현격한 관품 차이는 행수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또 상술한 대로 종4품은 참서관인데, 4개월간 면직될 만한 허물로 참하관으로 강등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강등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면, 이순신의 만호직 파직은 공무처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지 관직을 이용하여 私利를 추구하는 독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두 차례 모두 2년이 되지 못하여 도로 서용되었으므로 그가 사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순신이 얼마 되지 않아 복직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가 파직불서 내지 추탈제명의 처분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특히, 원칙적으로 조선 관료제에서는 降任이 없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42)</sup> 이를테면 이조와 병조의 5~6

40)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예전 朝儀.

41) 『중종실록』 권94, 중종 35년 10월 7일 을축.

42) 김중권, 앞의 논문, 201쪽. 다만 군현의 수령으로 나가는 것은 강임으로 보지 않은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품 실무자인 낭관은 4품 이상을 역임한 사람을 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sup>43)</sup> 결론적으로 이순신이 만호직에서 파직되면서 자급이 강등되거나 직첩이 회수되었다 한다면 조선의 인사행정제도와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설령 그가 사죄를 지어 자급을 강등당하더라도 최대 4품 낮아진 종6품 상당의 관직으로 복직하였을 것이며, 직첩을 회수당한 뒤 다시 환급받는 경우라면 이전의 자급을 회복했을 것이므로 발포만호에서 파직된 지 5개월 뒤 종 8품직 훈련원봉사가 될 수는 없다.

#### 나. 조선 중기 권관의 만호진 차송 실태

필자는 최근 연구에서 사료상의 만호 기록을 재검토하였다.<sup>44)</sup> 만호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2~3품 상당의 고위관직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하락하였으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까지는 초급무관에게 권관의 직함을 주어 만호의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조선은 15세기 말 이래 각지의 鎭堡에 대해 법제상 등급을 구분하여 첨사, 만호, 권관을 각각 지휘관으로 차송하였으나, 1553년의 다음 기록을 시작으로 법제상 종3품 첨사, 종4품 만호가 차송되어야 하는 곳이라도 연소한 무과 급제자에게 권관직을 주어 진보를 지휘하게 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였다.

만호와 첨사는 마땅히 나이가 젊고 武才가 있는 出身者 중에서 미리 선발해야 된다는 전교는 지당합니다. … 첨사는 3품이고 만호는 4품이어서 젊은 사람들의 자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의논이 있었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

43) 『경국대전』 이전 제수 吏兵曹郎.

44) 이철희, 「조선시대 權管의 제도화와 인사운용」, 『군사』 132, 2024, 307~313쪽.

에는 첨사와 만호를 차송하는 곳은 관방의 중요한 곳이라 생각 되니 자급이 모자라는 나이 젊은 무신을 권관의 칭호로 차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첨사와 만호를 ... 젊은 出身 중에서 뽑아 보낸다면 ... 外侮도 잘 막을 것입니다. 이 의논이 종전부터 있었으나 번번이 자급이 직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중요한 진보에 자급을 문제삼지 말고 젊은 출신을 뽑아 보내어 권관이라 일컬으면 『대전』 官名을 고치지 않더라도 일시의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45)</sup>

권관은 18세기의 『속대전』(1746)에서 관품이 종9품으로 확정되었으나, 조선 중기에는 법제상 관품이 정해지지 않은 品外官이었으며 관직명도 ‘임시로 관할한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하였다.<sup>46)</sup> 실제로도 3품에서 9품까지 다양한 경력의 무관에게 권관직이 제수되었다. 동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종4품 만호직에 제수되기 위해 행수법의 하한인 종5품 이상의 자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였으나, 동 정책에 따라 경력이 짧고 자급이 낮은 무관이라도 법제상 만호가 지휘하여야 하는 진보에 권관의 직함을 가지고 차송될 수 있었다. 이 시기부터 사료상 권관이 만호진을 지휘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16세기 후반에 활동한 수군 지휘관 朴世廉과 朴光春의 실물 고신은, 그들이 각각 무과급제 1년과 5년 만에 정9품의 자급을 가진 권관으로서 적량만호진과 마도만호진에 차송된 사실을 보여준다.<sup>47)</sup>

45)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윤3월 14일 경신.

46) 『세조실록』에는 1461년 여진족 출신 김사충을 언급하는데 한 기록에는 권관, 다른 기록에는 임시로 차송된 만호(權差萬戶)로 되어 있다. 『세조실록』 권24, 세조 7년 4월 23일 계사; 5월 8일 정미.

47) 한국고문서자료관, 박세렴 고신(1559);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박광춘 고신(1585). 박광춘은 이후 임진왜란에서 군공으로 정5품의 자급을 받고 삼천진권관으로 옮긴다. 권관의 자급이 9품보다 상당히 높았을 수 있음

다만 정책의 시행 이후 관찬·사찬 사료를 가리지 않고 직책명을 표기할 때 만호와 권관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권관이 얼마든지 관찬사료에 만호로 표기될 수 있었다. 필자가 앞서의 연구에서 정리한, 동일인물이 동일 시기에 사료에 따라 만호로도, 권관으로도 표기된 사례는 <표 3>과 같다. 여기에 나타나는 무관들은 모두 급제 10년 이내의 연소한 무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직 표기 혼란 사례는 동일인물이 여러 사료에 거듭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입증된 것이며, 사료가 부족하거나 단편적인 경우 실제로는 권관으로서 만호진을 지휘한 인물이라도 단지 만호로 기록된 사료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표 3>의 이대원은 녹도권관이라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단 1회 등장하며, 그 외의 모든 실록 기사 및 『승정원일기』, 『연려실기술』, 『난중잡록』 등에서는 모두 녹도만호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후에 설명할 바와 같이 상당수 연구자들은 권관으로 보고 있다.

<표 3> 권관·만호 기록이 동시에 나타나는 16세기 후반 무관 목록<sup>48)</sup>

| 성명  | 급제   | 권관 기록            | 만호 기록                  | 해당 鎭堡의<br>법제상 지위 |
|-----|------|------------------|------------------------|------------------|
| 鄭運  | 1570 | 금갑도권관(1580)      | 금갑도만호(1580)            | 만호영              |
| 李大源 | 1583 | 녹도권관(1587)       | 녹도만호(1587)             | 만호진              |
| 金仁英 | 1583 | 여도권관(1592.5.~8.) | 여도만호(1592.8.)          | 만호진              |
| 賈安策 | 1583 | 前 권관(1592.6.)    | 前 만호(1592.7.)          |                  |
| 李英男 | 1584 | 울포권관(1592.4.)    | 울포만호(1592.4.)          | 권관보              |
| 李汝恬 | 1584 | 사랑권관(1592.8.)    | 사랑만호(1592.5.; 1594.3.) | 만호진              |
| 趙孝悅 | 1594 | 당진포권관(1598)      | 당진포만호(1598.11.)        | 만호진              |
| 曹德獐 | ?    | 서천권관(1598)       | 서천만호(1598.11.)         | 만호진              |

을 보여준다.

48) 이철희, 앞의 논문, 305-306쪽. 원문에 있는 권관 및 만호 기록의 출처는 생략하였다.

#### 나. ‘만호’ 역임기 이순신 관직 및 자급의 검토

이순신을 정식 만호로 볼 경우 발생하는 의문점과, 권관을 만호진에 파견하면서 관행적으로 만호로 호칭한 16세기의 사료들을 고려할 때, 이순신이 실제로는 발포권관과 조산권관에 제수되었으나 당시의 관행에 따라 사료에 만호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순신의 만호 관력에 대한 당대 사료는 조산만호에 대한 실록의 기록뿐이며, 『징비록』에는 만호 경력 언급이 없다. 그의 만호 관력은 주로 17세기 이후 이분의 「행록」을 비롯한 각종 행장기 및 비문 등이 출처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직명이 기록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순신의 관력은 동시대 黃進(1550~93)과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황진은 이순신과 같은 1576년 등과 하였고 삼년상으로 인한 공백기도 유사한 시기에 경험하여 근무 일수가 거의 같다. 황진의 고신은 다수가 현존하여 그의 관직과 자급 및 승진 사유를 대부분 알 수 있다.<sup>49)</sup> 급제 당시 자급이 없었던 이순신과 달리 황진은 이미 종9품 자급을 가지고 忠順衛에 소속된 상태로 급제하였으며, 관력 초반에 청요직인 선전관을 거쳤다.<sup>50)</sup> 그는 중간에 파직도 없었고 시험성적 및 군공으로 여러 번 別加를 받아 특별승진하였으므로 이순신의 승진 속도가 그보다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49)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황진 고신(1577; 1579; 1580; 1582; 1587).

50) 趙翼, 『浦渚集』 권35 행장, 「忠淸道兵馬節度使黃公行狀」.

〈표 4〉 황진의 고신 및 행장 기록에 나타난 관력(1576-87)

| 연도       | 관직       | 자급     | 비고  |
|----------|----------|--------|---|
| 1576.10. | 등과       | 종9품    | 급제 당시 忠順衛                                       |
| 1577.6.  | 훈련원봉사    | 정9품    | 급제로 인한 당연승진                                     |
| 1579     | 훈련원봉사    | 종8품    |   |
| 1579.6.  | 훈련원봉사    | 종7품    | 1577년 취득 3별가(종계변무 시행) 적용으로 1차급(정8품) 건너뛰어 승진     |
| 1580     | 선전관      | ?      | 고신 없음(행장 기록)                                    |
| 1580~82  | 모친상으로 사직 |        |   |
| 1582.7.  |          | 종6품 하계 | 1579년 黜貳 1등 및 1580년 취득 별가 적용으로 1차급(정7품) 건너뛰어 승진 |
| 1582.11. | 행옹양위사맹   | 종6품 상계 | 1582년 취득 별가 적용                                  |
| 1582.12. | 가산도찰방    | 종6품 상계 |   |
| 1585     | 안원보권관    | ?      | 고신 없음(행장 기록)                                    |
| 1587.12. | 행호분위사맹   | 정6품 하계 | 1584년 취득 별가(여진족 토벌) 적용                          |

수군에서는 황진과 같이 고신 등 특정 인물의 자급 변동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으나, 과거 연구에서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한 것으로 이해되었던 수군 만호 상당수가 실제로는 권관이었음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대원은 일부 연구자가 사료상의 만호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여 27세에 종4품 만호직에 오른 ‘청년 만호’로 호칭하기도 하였으나(김덕진, 2009; 2010),<sup>51)</sup> 사료상의 혼란에 기인한 것으로 군사사 연구자 상당수는 권관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7품이라고 기록한 당대의 사료도 존재한다(이민용, 2004; 민덕기, 2010; 이경식, 2016; 박주미, 2023; 이철희, 2024). 을묘왜변에서 21세의 나이로 전사한 曹顯은 일부 사료에서 종3품직인 가리포첨사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료는 착오이고 실제로는 달랑권관이었던 것이 후속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다(김덕진, 2020). 1592년 4월

51) 『藥泉集』에는 1566년생으로 기록되었으나, 무과방목에는 1553년생으로 차이가 있다.

30세의 나이로 이순신에게 請兵한 경상우수영 소속 李英男은 기존에 실록과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따라 울포만호를 역임한 뒤 소비포권관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근래의 연구에서는 『息城君實記』의 기록을 좇아 울포권관 역임 후 소비포권관으로 수평이동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낙진, 2007; 전호수, 2007). 18세기 육군의 사례로 일대일 비교는 어렵겠으나, 『盧尙樞日記』의 저자 노상추가 이전에는 함경도 진동권관 역임 후 3년 만에 고속 승진하여 정3품 당상관으로 가자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정해은, 2008) 최근 연구에서 사실은 진동만호를 역임하였던 것으로 바로잡힌 바도 있다(이강원, 2023).

다만 본고에서 제기하는 이순신의 ‘발포권관’ 및 ‘조산권관’ 재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료상의 근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본 가설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두 가지 있다. 먼저 발포만호진에는 1592년 2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발포권관이 到任하여 발포만호진을 지휘하다가 4월 능력 부족을 이유로 체직되고, 이후 훈련원봉사 羅大用이 대행한 사실이 『난중일기』에 있다.<sup>52)</sup> 이순신이 근무한 1580년경에도 얼마든지 권관이 발포에 차송되어 진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조산만호 재임에 관련하여 그가 권관이었음을 시사하는 사료가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탄금대 전투에 참전한 申欽(문과급제 1586)의 언급에 의하면 이순신은 권관으로 있을 때 류성룡에 의하여 발탁되었다.<sup>53)</sup>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한 것은 세 차례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52) 李舜臣, 『亂中日記』, 임진년 2월 7일 갑자; 3월 23일 계미; 4월 18일 정미. 2월 7일자 일기에는 발포라고만 되어 있고, 3월 23일과 4월 18일에 발포권관이라는 직함이 표기되어 있다. 옥포해전에서는 나대용이 발포진을 지휘하였으며 6월에는 만호 黃廷祿으로 교체된다.

53) 『승정원일기』 9책, 인조 3년 10월 12일 정해. “李舜臣, 自爲權管時, 柳成龍拔擢矣”.

그가 1586년 삼년상을 마치고 사복시주부로 있을 때 천거하여 조산만호로 삼은 것,<sup>54)</sup> 1588년 조산만호를 역임하다 백의종군을 하였을 때 천거한 것,<sup>55)</sup> 1591년 정읍현감으로 재임 중일 때 천거하여 전라좌수사로 삼은 것이다.<sup>56)</sup> 이 중 이순신이 권관으로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588년뿐이므로, 이 때 이순신은 조산보에서 만호가 아니라 권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설령 이순신의 공식 직책을 권관으로 볼 사료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급을 만호의 관품에 해당하는 종4품, 또는 행수법에 의해 만호직 제수가 가능한 종5품 이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16세기에는 권관이 만호로 기록된 사례가 많은데다, 사료상에 오직 만호로만 기록되더라도 자급이 훨씬 낮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물이 전해져 오는 金銑之(무과급제 1588<sup>57)</sup>)의 고신에는 그의 자급을 전력부위(종9품), 관직을 곡포만호로 표기하고 있다.<sup>58)</sup> 경상우수영 소속 곡포보는 당시 법제상 권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유물은 16세기 무관 관직에 대한 사료상의 혼란을 보여준다. 적어도 본고의 연구는 이순신의 만호 역임기 자급이 만호의 법적 관품인 종4품보다 훨씬 낮았을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 다. 유사한 ‘만호’ 재임 사례의 검토

사료에 만호로만 표기되지만 전후 관직이나 연령, 무과 합격 후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4품 상당의 자급을 지녔다고 보

54)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27일 무오.

55) 尹鑄, 『白湖全書』 권23, 「統制使李忠武公遺事」.

56) 柳成龍, 『懲愆錄』 권1.

57) 奇正鎭, 『蘆沙集』 권26, 「宣武原從功臣行寶城郡守金公墓碣銘」.

58) 한국고문서자료관, 김선지 고신(1593).

기 어려운 사례들은 16세기 후반에 더 있다. 임진왜란 참전 장수들 중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사례들과, <표 2>에 있는 민사준의 사례를 뽑은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사례들에서 2, 30대의 초급무관들이 과거 급제 10년 이내에 만호라 칭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만호진 근무를 마치고 6품 내외의 관직으로 전임되었다. 연도를 특정할 수 없어 <표 5>에는 수록하지 않았으나, 1598년에는 공을 세운 前 정포만호 趙翼이 이미 6품에 올랐으므로 논상을 위해 승진시켜 수령에 제수하자는 건의가 보인다.<sup>59)</sup> 다만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현감의 자급이 반드시 종6품인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자급을 추정하는데 있어 연령과 근무일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임진왜란 참전 장수 등의 만호 재임 관련 관력

| 성명  | 출생   | 등과   | 만호재임           | 재임전 관직    | 재임후 관직(관품)                             |
|-----|------|------|----------------|-----------|--|
| 魚泳潭 | 1532 | 1564 | 여도만호(1564 이전)  | 급제 전 임용   | 사천현감(1580, 종6품)                        |
| 閔士俊 | 1537 | 1576 | 만호(1577 이전)    | 겸사복(1576) | 6품 승서(1577)<br>훈원원습독(1580, 종6품)        |
| 張潤  | 1552 | 1582 | 발포만호(1585 이전)  | 급제 직후 임용  | 선전관(1588)<br>사천현감(1591, 종6품)           |
| 宋汝棕 | 1553 | 1594 | 녹도만호(1592)     | 교생, 군관    | 서부주부(1594, 종6품, 겸직)<br>단성현감(1599, 종6품) |
| 禹致績 | 1560 | 1583 | 영등포만호(1592 이전) | ?         | 6품 승서(1592)<br>거창현감(1593, 종6품)         |
| 李雲龍 | 1563 | 1584 | 옥포만호(1589)     | 선전관(1587) | 웅천현감(1594, 종6품)                        |

59)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27일 무인.

## 4. 정읍현감 역임 및 삼도수군통제사 복직기

### 가. 정읍현감 역임기

이순신이 1589년부터 1591년까지 역임한 정읍현감직은 법제상 종6품직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의 조산만호직을 종4품직의 만호로 이해하여 강등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sup>60)</sup> “고생한 무장들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지방관 자리”라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자도 있다.<sup>61)</sup> 그러나 지방관 역시 행수법에 의하여 자급과 관품이 상이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므로 하급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을별로 역대 지방관의 성명과 도입 및 교체 사유를 기록한 先生案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정읍현을 포함한 많은 군현의 선생안에는 지방관의 자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역대 현감의 자급이 대부분 알려져 있는 전라도 곡성현 선생안에 의하면, 선조 등극(1567)부터 임진왜란 발발(1592)까지 현감은 13명이었는데, 그들의 자급은 정3품 5명, 종3품 2명, 정4품 2명, 종4품 1명, 종6품 3명으로 되어 있다.<sup>62)</sup> 임란 발발부터 남원부에 통폐합(1597)되기까지 도입한 현감 5명은 정3품 4명, 종6품 1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3개 현(부안, 운봉, 임실)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의 현감 중 3품

60)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2005, 319쪽; 김강녕, 「이순신의 정읍현감 시절 : 그 행적과 생애사적 함의」, 『한국과 세계』 5, 2023.

61) 이민웅, 앞의 책, 2012, 63쪽.

62) 권수용 편역, 『전남선생안』, 심미안, 2017, 32~54쪽.

이 34%이고, 4품 26%, 5품 10%, 6품 30%로 구성되어 곡성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63)</sup> 17~19세기에 이르면 3개 현의 현감 역임자 중 85%가 정3품의 자급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이순신과 같이 남해안의 현감직에 제수된 다른 무관의 사례도 현감 재임중인 무관의 자급을 종6품으로 특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산대첩 이후 1592년 8월의 대규모 포상으로 이순신 함대에서는 홍양현감 裴興立, 광양현감 魚泳潭, 녹도만호 鄭運, 사도첨사 金滄이 모두 정3품 상계로 가자되었다. 현감은 종6품직, 만호는 종4품직, 첨사는 종3품직이지만 그들의 자급은 같았던 것이다. 앞의 주석에서 언급한 최호도 1580년 제수된 만호직을 마치고 1581년 조봉대부(종4품 하계)로서 행강진현감에 제수되었으며, 1587년에는 중직대부(종3품 상계) 행무안현감, 1588년에는 통훈대부(정3품 하계) 행무안현감이 되었다.<sup>64)</sup> 황진 역시 1591년 조봉대부로서 행동복현감에 제수되었다.

이처럼 현감직은 종6품보다 훨씬 높은 품계의 관원이 제수되는 일이 흔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자급보다 높은 벼슬을 받는 수직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반대의 행직에는 제한이 없었다. 더구나 『경국대전』에는 수령을 거치지 않은 자는 홍문관 등 청요직 역임자를 제외하고는 4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었다.<sup>65)</sup> 다만 첨사나 만호를 거친 자는 해당 제한을 면제하였다.<sup>66)</sup> 권관이 만호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

63) 권기중, 앞의 논문, 2018, 18쪽.

64) 한국고문서자료관, 최호 고신(1581; 1587; 1888).

65)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66)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으로 보인다. 이순신이 정읍현감에 제수된 것은 4품 이상의 관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1589년 1월 李山海와 鄭彦信으로부터 不次可用 대상으로 추천받고 7월 선조의 왕명에 의해 대상자로 지정된 후에 12월 정읍현감에 제수되었으므로 좌천 내지 강등으로 보기 어렵다.<sup>67)</sup> 최호와 황진 역시 임진왜란 이전 현감직 역임 경력으로 개전 후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 나. 삼도수군통제사 복직기

이순신이 1593년 삼도수군통제사에 제수된 당시 그의 자급은 1592년 7월에 받은 정2품 상계 정헌대부였다. 이후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그는 자급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복직할 때 자급이 정2품 정헌대부에서 정3품 절충장군으로 강등되었고, 1598년 명나라 경리 楊鏞의 권고에 따라 다시 자급을 회복하였다는 설이 200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다. 이 설은 이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알려지다가, 학계에서는 문지성(2012)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sup>68)</sup> 이에 따르면 1598년 4~5월에 양호가 八賜品을 전달하면서 정3품에 불과한 이순신의 벼슬을 올려달라고 선조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나, 문지성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배한동(2014)은 이 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순신이 정3품으로 복직하여 1597년 8월 당시에는 휘하의 경상우수사 배설과 같은 품계였다고 하였고, 박현규(2018)는

67)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1월 21일 기사; 2월 12일 기묘; 7월 28일 계유;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2년 12월.

68) 김병륜(2016)의 연구에 의하면 해당 설은 소설가 김정진의 2005년 연재에서 확산되었다고 한다.

문지성의 설을 비판하고 김경진의 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해당 설을 긍정하였다.

아직 충분한 학술적 검토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설에 대해 진위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파직을 당하더라도 곧장 직첩이 회수되지는 않는다. 직첩이 회수되더라도 다시 서용될 때는 이전의 직첩을 환급해주었으므로 사죄를 짓지 않는 이상 자급이 강등될 수는 없다. 1597년 이순신의 복직 당시 내려진 공문서로서 현존하는 「기복수직교서」 및 「사명훈유교서」에서는 이순신의 자급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명량해전 승전 후 자신이 승정대부로 가자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전언을 기록하고 있고,<sup>69)</sup> 「행록」에서도 선조가 승정대부로 가자하는 것을 논의했다가 언관의 반대로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종1품 하계인 승정대부는 정2품 상계 정헌대부의 바로 위 자급이므로 1597년 시점에 이순신은 이전과 같이 정헌대부였음을 알 수 있다.

1597년 이순신이 강등되었다는 사료적 근거는 1598년 4월 이순신·金應緘을 정3품 상계 절충장군에서 종2품 하계 가선대부로 가자하고 禹壽는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라는 선조의 명령에 대한 실록 기사이다.<sup>70)</sup> 그러나 직전에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 포상은 옳지만 가자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였으므로 서로 모순이 있다.<sup>71)</sup> 실록의 이 기사는 정확히 같은 시기인 1598년 4월 절충장군에서 가선대부로 가자된 경상우수사 李純信의 오기로 보인다.<sup>72)</sup> 이순신은 각종 사후 기록에서 최종품계가 정헌대부로 나

69) 李舜臣, 『난중일기』 정유년 11월 11일 무술.

70)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28일 임오.

71)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15일 기사.

72) 李德龜, 「完川府院君行蹟記」. 이에 따르면 1598년 4월 홍양현을 침범한 왜선 30여척을 격멸한 공로로 선조가 李純信을 가선대부로 가자하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선조실록』에는 李舜臣과 李純信이 서로 오기된 사례

타나며,<sup>73)</sup> 현재 유실된 이순신의 우의정 증직교지(1598)에서도 정헌대부 이순신에게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을 증직한다고 되어 있어 가선대부일 수 없다.

## 5. 결론 : 이순신 생애의 재검토 필요성

이순신의 관력, 특히 강등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었다. 조선 관료제의 인사행정에 대한 검토와 16세기 후반 권관이 만호의 직책을 대행하게 한 제도, 만호로 기록된 사람이 6품 이하의 자급을 보유하고 있었던 다수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이순신이 실제로는 급격한 승진과 강등을 겪지 않았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 종4품 만호를 지낸 후 파직 및 백의종군을 거쳐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이순신은 실제로는 권관으로 만호의 직책을 대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만호였더라도 그의 자급이 만호직에 해당하는 종4품 내외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고에서 제기한 가설은, ‘발포권관’과 ‘조산권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이순신이 초기 관직생활에서 고속 승진과 강등을 여러 차례 겪었다는 기존의 해석이 당시의 법제 및 인사관행으로 설명하기

---

가 더 있다. 1598년 8월 23일 기사에는 경상관찰사 鄭經世가 우수사 李舜臣을 언급하나 당시의 경상우수사는 李純信이었으므로 오기로 보인다. 동년 8월 20일 기사에는 豐臣秀吉의 사망설을 보고한 전라수사 李純信이 나오지만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李舜臣 또는 경상우수사 李純信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73) 崔有海, 『李忠武公全書』 권10, 「行狀」; 李恒福, 『李忠武公全書』 권11, 「忠愍祠記」.

어렵다는 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다. 16세기 권관을 역임하였던 여러 무관들이 사료에 만호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본고의 가설이 사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조선왕조에서 파직과 복직이 매우 일상적이었고 관료들은 빈번하게 자발적으로 사직했음에도, 이순신은 청년 시절 강직한 성품으로 파직과 강등이라는 고난을 겪은 것으로 자주 묘사되었다.<sup>74)</sup> 그러나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이순신은 발포만호진에서 권관으로 근무하다 파직된 후에도 자급이 강등되거나 좌천되지 않았으며 꾸준히 자급이 올라갔다. 동 가설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순신은 등과 직후부터 병조의 주목을 받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 권관에 제수되어 만호진에 파견되는 초급무관들은 조정의 정책에 따라 중앙의 병조에서 年少有才한 자를 가려 뽑아 차송하게 되어 있었으며,<sup>75)</sup> 적합하지 않은 자가 차송될 경우 추천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1584년에 새로 부임한 권관이 전임자보다 못하다는 보고를 받은 선조가, 권관을 잘 가려 뽑으라는 왕명을 받들지 않은 잘못으로 담당 낭관 및 당상을 推考하라고 명한 기록이 있다.<sup>76)</sup> 1586년 이순신이 사복시주부가 된 지 16일 만에 조산만호의 자리가 비자 조정에서 그를 조산보에 擇遣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sup>77)</sup>

기존에는 16세기 조선의 무관 인사정책에 대해 1583년 니탕개

74) 노영구, 「이순신의 리더십에 나타난 소통의 노력」, 『역사비평』 89, 2009, 121~124쪽; 오종록, 「21세기 한국 사회와 이순신」, 『역사비평』 109, 2014, 16쪽.

75) 『명종실록』 권14, 명종 8년 윤3월 8일 갑인; 윤3월 14일 경신.

76) 『선조실록』 권18, 선조 17년 1월 14일 임진.

77) 李芬, 『李忠武公全書』 권9, 「行錄」.

의 난을 전후하여 많은 무관을 선발한 대량시취와,<sup>78)</sup> 특히 1580년대 후반부터 유능한 무관들을 불차탁용하여 남해안의 지휘관 및 수령으로 차송한 조치가 잘 알려져 있었다. 이순신의 초기 관력에서 만호직 역임은 이와 유사한 불차탁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었으나(최석남, 1992), 만호 역임 후 급격한 자급 하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본고는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초급무관의 자급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만호의 직책을 수행하게 한 권관 제도에 주목함으로써 이같은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기존에는 임란기 다수 지휘관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인사적체로 유능한 무관들이 제때 등용되지 못하였다는 시각도 있었으나,<sup>79)</sup> 본고의 연구를 계기로 16세기 후반 권관 제도를 통해 조기에 선발, 육성된 지휘관들이 임진왜란 극복에 공헌한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물사적인 측면에서 사료를 읽을 때 인물의 官階와 관직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료에 나타나는 인물의 실제 자급은 선후의 관직 등을 잘 살펴 엄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8) 심승구, 「朝鮮 宣祖代 武科及第者의 身分 : 1583~1584년의 大量試取 榜目を 중심으로」, 『역사학보』 144, 1994.

79)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 2013, 520~525쪽.

## 〈참고문헌〉

### 1. 원자료

- 『經國大典』 『大明律講解』 『大明律直解』 『承政院日記』 『李忠武公全書』  
『朝鮮王朝實錄』  
奇正鎭, 『蘆沙集』  
金堉, 『潛谷先生遺稿』  
南九萬, 『藥泉集』  
柳成龍, 『懲毖錄』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德龜, 『完川府院君行蹟記』  
李舜臣, 『亂中日記』  
李植, 『澤堂先生別集』  
尹鑄, 『白湖全書』  
趙慶男, 『亂中雜錄』  
趙翼, 『浦渚集』

### 2. 연구서 및 연구 논문

- 국립진주박물관 편, 『삶에서 신화까지 忠武公 李舜臣』, 예맥(2003)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전북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동고전연구』 41권(2018)  
권수용 편역, 『전남선생안』, 심미안(2017)  
김강녕, 「이순신의 정읍현감 시절 : 그 행적과 생애사적 함의」, 『한국과 세계』 5호(2023)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호(2016)  
김경수, 『이순신의 『난중일기』 읽기』, 세창미디어(2021)  
김경태, 「2000년대 이후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 『조선 시대사학보』 108집(2024)  
김낙진, 「임진왜란기 이영남 장군의 수군 활동」, 『중원문화연구』 11권(2007)  
김덕진, 「李大源과 鄭運, 그리고 雙忠祠」, 『해양문화연구』 2호(2009)  
김덕진, 「1587년 損竹島 倭變과 壬辰倭亂」, 『동북아역사논총』 29호(2010)

- 김덕진, 「전라도 영암의 達梁浦, 達梁鎭, 古達梁」, 『남도문화연구』 41호 (2020)
- 김렬, 「조선시대 관찰사의 파직 실태」, 『한국행정논집』 27권(2015)
- 김렬, 「조선시대 관료의 승진 실태: 6품 승진(승록)의 기준 및 요인」, 『한국행정논집』 29권(2017)
- 김병륜, 「이순신의 明 都督 임명설에 대한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25호 (2016)
-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현실』 87호 (2013)
- 김영숙, 「忠武公 李舜臣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 김중권, 「朝鮮朝 公務員(官吏)任用制에 관한 行政法的(公務員法的) 考察」, 『법제연구』 27호(2004)
- 김효수, 「李舜臣의 리더십에 대한 現代的 照明」,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3)
- 나영훈, 「17~18세기 典牲署의 관직 운영과 參下官의 官路」, 『동양고전연구』 69집(2017)
- 노영구, 「이순신의 리더십에 나타난 소통의 노력」, 『역사비평』 89호 (2009)
- 노영구,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권(2010)
- 문지성, 「통영충렬사 '八賜品'에 대한 고찰(下)」, 『중국어문학논집』 73호 (2012)
- 민덕기,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담론』 57집(2010)
- 박재광,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임진왜란」, 『서울과 역사』 71호(2008)
- 박정규,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 재조명」, 『이순신연구논총』 11호 (2009)
- 박주미, 「임진왜란시 조선수군의 승전요인 - 조선초기 왜란에 의한 조선수군 변화를 중심으로 -」, 『군사』 128호(2023)
- 박현규, 「명 신종제의 이순신 八賜品 내력 고찰」, 『중국학논총』 60집(2018)
- 배한동, 「경상우수사 裴楔 장군의 임란 활동과 공적」, 『동양예학』 33권 (2014)
- 송대성, 『충무공이순신과 현충사』, 현충사관리소(1999)

-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호(2005)
- 심승구, 「朝鮮 宣祖代 武科及第者の 身分 : 1583~1584년의 大量試取 榜目を 중심으로」, 『역사학보』 144집(1994)
- 오종록, 「21세기 한국 사회와 이순신」, 『역사비평』 109호(2014)
- 이강원, 「18세기 후반 노상주의 함경도 진동만호 활동과 성과」, 『한국사연구』 202호(2023)
- 이정식, 「전투력 요소로 본 이순신의 전투준비태세와 초기전투 승리요인」, 『군사』 98호(2016)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2004)
- 이민웅,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몇 가지 인식문제 고찰 - 가계, 관력,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77집(2010)
- 이민웅, 「이순신 정론Ⅱ - 출신 배경과 명량해전 철쇄설치 문제 -」, 『이순신연구논총』 17호(2012)
-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2012)
-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 『이순신연구논총』 10호(2008)
- 이상훈·노성호·박재광·최두환, 『충무공 이순신』, 대한출판문화협회(1998)
- 이성무, 『朝鮮初期 兩班研究』, 일조각(1980)
- 이성무, 『명장열전』, 청하출판사(2011)
- 이승현, 「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57호(2018)
- 이철희, 「조선시대 權管의 제도화와 인사운용」, 『군사』 132호(2024)
-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호(2010)
- 장학근, 「武科合格軍官生活戰術能力에 나타난 李舜臣의 武學研究」, 『이순신연구논총』 3호(2004)
- 제장명, 「조선시대 백의종군 사례와 이순신의 백의종군」, 『이순신연구논총』 15호(2011)
- 제장명, 「이순신 정론Ⅰ - 해전횃수, 면사첩, 백의종군 -」, 『이순신연구논총』 17호(2012)
- 전호수, 「壬亂殉國 加里浦僉使 李英男將軍의 家系와 生涯」, 『상산문화』 13호(2007)

- 전호수,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2011)
- 정해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 《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호(2008)
- 정혜영, 「이순신의 리더십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7)
- 조성도, 『충무공 이순신』, 연경문화사(2001)
- 조신호, 「이순신 리더십의 성격과 교육적 가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 조인희, 「丁酉再亂史 연구에 관한 한일학계 연구의 현황」, 『학림』 46권(2020)
- 최두환,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학민사(1998)
- 최두환,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우석(1999)
- 최두환, 「忠武公 李舜臣의 리더십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 최두환, 『성웅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뿌리출판사(2010)
- 최석남, 『救國의 名將 李舜臣』, 교학사(1992)
- 한상권, 「公罪와 私罪」, 『법사학연구』 53호(2016)
- 한충희, 「관직과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권(1994)
- 황인명, 「忠武公 李舜臣의 革新思想을 통한 政府革新 方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 3. 기타

- 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 한국고문서자료관, 金銑之 告身(1593)
- 한국고문서자료관, 朴世廉 告身(1559)
- 한국고문서자료관, 崔漢禎 告身(1552)
- 한국고문서자료관, 崔湖 告身(1577; 1579; 1580; 158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people.aks.ac.kr>
-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朴光春 告身(1585)
-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 黃進 告身(1577; 1579; 1580; 1582; 1587; 1591; 1592; 1593)

〈Abstract〉

## A re-examination of the military career of Yi Sun-Shin

Lee, Cheol-Hui (SK Innovation Co. Ltd.)

This study examines the career of Admiral Yi Sun-Shin of Joseon, focusing on changes in his bureaucratic rank (*Pungye*). It has been believed that his career was marked by repeated promotions and demotions. He was appointed *Manho* (4th rank) in 1580 and 1586, yet historical sources place him at the 6–8th rank before and after his tenure as *Manho*. This appears inconsistent, as abrupt changes in rank were not permitted within Joseon's bureaucratic system.

As young military officers often served in the role of *Manho* under the title of *Gwongwan*, it is suggested that Yi held the position of *Gwongwan*, acting *Manho*. It is highly unlikely that he held the 4th rank at that time. Additionally, his appointment as a regional magistrate (6th rank)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demotion. Many magistrates held ranks higher than 6th, and such a post was a prerequisite for further advancement. Finally, the recent claim that Yi was demoted again in 1597 is found to be unsupported by historical evidence.

This study concludes that Admiral Yi likely did not suffer any demotion throughout his career. Rather, he appears to have been consistently promoted based on his competence and merit.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revised understanding of Joseon's military personnel policy.

Keywords : Yi Sun-Shin, Manho, Gwongwan, Magistrat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논문투고일 : 2025.04.04. 심사완료일 : 2025.05.26. 게재확정일 : 2025.06.04.